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

1. 심 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8. 27.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8. 8. 25
- 다. 상 정 일 자 : '98. 8. 25 (제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 설명자 : 내무과장 최 영 옥

나. 제정사유

- 지금까지는 대통령 훈령 28호 '통합방위지침'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나 '97년 6월 1일부터 통합방위법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통합방위법 제5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협의회는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등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등을 심의 (안 제2조)
-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의 유고시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 (안 제3조)
- 군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됨. (안 제4조)
- 읍면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은 실장과 6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인이상 6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 (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제14조에 의하여 군 통합 방위협의회의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 단,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동 협의회의 간사직명 (안 제3조 ③항),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 (안 제5조 ①항)의 명칭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것임.

예1) 조례안 제3조 ③항

1. 총무담당간사 : 내무과장 → 총무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폐지됨.
3. 심리전담당간사 : 문화공보실장 → 담당과장 (문화관광과로 개칭)

예2) 조례안 제5조 ①항

- 읍면 통합 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읍면장 → 부·읍면장제 폐지

4. 질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화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화순군의회의회장
2. 육군 제8332부대 5대대장
3. 국가안전기획부 화순지역담당 관계자
4. 국군기무부대 화순지역담당 관계자
5. 화순경찰서장
6. 화순교육장
7. 화순군 재향군인회장
8. 한국전력공사 화순지점장
9. 한국통신 화순전화국장
10.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장
11. 화순군 농지개량조합장

- 12. 화순군 축산업협동조합장
- 13. 화순군 임업협동조합장
- 14.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자

③ 협의회 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1. 총무담당간사 : 내무과장
- 2.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3. 심리전담담당간사 : 문화공보실장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단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읍·면장이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6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부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 의료·구호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인이상 2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한 계장급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단체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